종 합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4년 영양군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4. 7.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 재심의 결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1.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조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계		17건	10	7	1	3,878	2	237,438	2	1,700
1	○ ○ ○ ○ 과	정원을 초과한 승진임용 부적정		1						
2	○ ○ ○ ○ 과	근속승진 및 근속승진자 승진에 따른 하위직급 승진임용 부적정		1						
3	○ ○ ○ ○ 과	공무원 교육훈련(상시학습) 업무처리 부적정		1						
4	# # # # # # #	지식재산권 사용허가 부적정	1							
5	* * 과	관급자재 수의계약 부적정		1						
6	○ ○ ○ ○ 과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 부적정		1						
7	& & & & 과 # # # # 과	민간단체 운영 보조금 정산 부적정	1		1	3,878				
8	@ @ @ @ 과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명령 등 사후관리 부적정	1						1	1,500
9	☆ ☆ ☆ ☆ 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 부적정	1						1	200
10	◎ ◎ ◎ ◎ 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조치 소홀	1							
11	◇ ◇ ◇ ◇ 과 ▽ ▽ ▽ ▽ 과	시설물안전법 관련 업무추진 부적정	1							
12	♧ ♧ ♧ ♧ 과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1				1	101,540		
13	◇ ◇ ◇ ◇ 과 ♧ ♧ ♧ ♧ 과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지원기술인 현장점검 지도·감독 소홀	1							
14	◇ ◇ ◇ ◇ 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1	135,898		
15	# # # # 과	▤▤▤ ▤▤▤▤(▤▤▤) 산책로 설치공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부적정		1						
16	▽ ▽ ▽ ▽ 과 ▒ ▒ ▒ ▒ 과 # # # # 과	◐◐◐◐◐◐◐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1							
17	▒ ▒ ▒ ▒ 과	건축허가(신고) 업무 처리 부적정		1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정원을 초과한 승진임용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에서는 202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되,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1. --서기관 승진임용 부적정

「영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 및 「영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하면 영양군에 두는 --서기관의 정원은 최대 3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영양군에서는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의 범위에서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진 임용하여야 하고, --서기관의 경우 최대 3명을 초과하여 승진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영양군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24. 1. 4.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시 --서기관의 현원은 3명으로 최대정원

1) 시행시기별 영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 별표의 --서기관 정원현황은 본문의 [표 1] 참고

3명 대비 결원이 없는 상태였고 2023. 12. 31. 서기관 --- 명예퇴직에 따라 서기관은 정원 2명(--서기관 3명일 경우 2명) 대비 현원 1명으로 결원이 발생하였고 해당직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대상자가 있었음에도 승진가능직렬을 --서기관으로 책정하여 승진임용가능하다고 관련자료를 작성 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2024. 1. 5. --5급 ---이 --서기관으로 임용되도록 하였다.

[표 1] --서기관 승진임용 부적정 현황

구 분 (임용일)	승진요인 책정현황 (명수)	당시 정·현원(2024. 1. 5. 기준)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 현황	
		정 원 (최소~최대)	현 원	실제 결원	--서기관	서기관
2024년 정기인사 (2024.1.5.)	-- 서기관 (1명)	• --서기관 : 1~3명 • 서기관 : 2~4명	• --서기관 3명 • 서기관 1명	서기관 1명	• 1명 - --5급 --- - 후보자명부 1위 * 승진임용	• 1명 - --5급 --- - 후보자명부 1위 * 승진대상배제

그 결과 2023. 12. 23.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 승진을 서기관으로 했을 경우 승진할 수 없었던 -5급 ---이 2024. 1. 5. --서기관으로 승진임용되었고 이로 인해 서기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5급 ---는 승진임용에서 배제되었다.

2. -- 7급 승진임용 부적정

「영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 및 「영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 별표[2]에 의하면 영양군에 두는 --7급의 정원은 5명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영양군에서는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의 범위에서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진 임용하여야 하고, --7급의 경우에는 5명을 초과하여 승진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영양군 ○○○○과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23. 7. 11. '2023년 7월 18일자 정기인사' 심의위원회 개최당시 -- 7급의 현원은 정원대비 결원이

2) 시행시기별 영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 별표의 --7급에 대한 정원현황은 본문의 [표 2] 참고

없는 상태였음에도 -- 7급에 대한 승진임용이 가능하다고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2023. 7. 14. 인사위원회에 심의·상정하고 정원을 초과하여 승진임용하도록 하였다.

[표 2] --7급 정원초과 승진임용 현황

(단위 : 명)

승진심사일 (승진임용일)	심사당시 정 · 현원 및 과원				정원초과 승진임용			비 고
	당해직급	정원	현원	결원	요인책정	승진인원	현원	
2023.7.14. (2023.7.18.)	--7급	5	5	-	조직개편 1명	1	6	정원초과 +1

그 결과 부적정한 인사 운용으로 인해 정원의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승진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승진할 수 없었던 -- 7급 1명이 승진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현재까지 -- 7급의 현원이 정원초과되어 운영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근속승진 및 근속승진자 승진에 따른 하위직급 승진임용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에서는 202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였다.

1. 승진임용 범위(배수) 밖의 자를 근속승진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의 6급·7급·8급·9급의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고,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9급의 경우 5년 6개월 이상(근속승진기간) 해당 계급에 재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조에 따르면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후보자명부 및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승진임용 배수범위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 되어 있는 근속승진 대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참고]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임용하려는 결원 수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명	결원 1명당 7배수
2명	결원 1명당 5배수
3명 이상 5명 이하	결원 1명당 4배수
6명 이상 10명 이하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 20명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35명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9급 재직기간 5년 6개월 이상 근무자를 대상자로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직렬 및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승진후보자 명부의 승진임용 범위(배수) 밖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 가능한 것으로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제출하여 해당 공무원을 근속승진 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영양군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22. 9. 22. 근속승진 대상자 심사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 –9급 ---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12위로 승진임용 범위(7배수) 밖에 있어 승진심사 대상조차 될 수 없는데도 승진배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근속승진 가능한 것으로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제출하여 2022. 9. 23. 근속 승진임용되도록 하였다.

[표 1] 승진임용 범위(배수) 밖의 자 근속승진 현황

인사위원회 심의일	근속승진 인사요인			실제 근속승진자 현황				비고
	승진 직급	대상자 (5년 6개월 이상)	배수 범위	소속	직급	성명	명부순위	
2022.9.23.	--8급	1명	7	----과	--9급	---	12	배수 밖

그 결과 승진임용 범위(배수)밖의 자로서 근속승진 임용될 수 없는 자가 근속승진 임용되었다.

2. 근속승진자 승진에 따른 하위직급 승진임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6급·7급·8급·9급의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고,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정부 예규) 제47조에 따르면 근속승진된 자의 신분변동시에는 인사기록규칙 제24호 서식 “발령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속승진자가 승진, 전출, 퇴직 등 현원 소멸시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 관리하며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승진, 전출,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직급으로 신규임용이나 승진 등의 충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근속승진자가 심사를 통해 승진할 경우 당시 증가된 것으로 간주했던 근속승진 된 직급의 정원은 당초의 직급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이를 승진요인으로 책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자의 승진의결 후속으로 그 바로 하위직급을 승진의결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영양군 ○○○○과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24. 1. 5. ‘2024년 1월 8일자 정기인사’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8 → 7급으로 근속승진(2014. 9. 27.)된 -- 7급 ---이 6급 승진의결됨에 따라 해당 직급의 정원은 당초의 직급으로 환원되어 후속 승진인사가 불가능함에도 승진후보자 명부에 근속승진 여부 등을 표시하지 않고 이를 승진요인으로 책정하여 --(직렬조정 : --→--) 8급 ---을 -- (직렬조정 : --→--) 7급으로 승진임용되도록 하였다.

[표 2] 근속승진자 승진에 따른 하위직급 부당승진 현황

인사위원회 개최일	근속승진자 포함 심사승진			승진에 따른 하위직급 결원 및 승진			부당승진	비고
	승진직급	총 승진인원	근속승진자 포함	하위직급	계획	실제승진		
2024.1.5.	7급→6급	1	1	8급→7급	1	1	1	8급→7급

그 결과 근속승진자 등 별도정원 인원에 대한 관리가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승진할 수 없었던 7급 1명이 승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무원 교육훈련(상시학습)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상시학습제도 운영,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 심사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고] '별표 1' 중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발췌

구분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5급 공무원 중 직위보유자	5급 이하	종전 기능직 공무원	종전 별정직 공무원
2008년~ 2010년까지	3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011년~ 2013년 12월 11일까지	5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2013년 12월 12일 이후	5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 시행 2023. 2. 15.)의 'Ⅱ.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편에 따르면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하되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법정 의무교육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과 연구사·지도사 및 일반직의 경우 해당 직급 재직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 3년이 경과한 경우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

으로 교육실적 인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동일 연도 내 동일 과정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기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부서에서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민간교육훈련기관 교육 등의 실적을 입력하고 교육훈련 실적의 적정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점검하며 오류 및 부정 입력한 경우 교육훈련부서는 즉시 입력내용을 삭제하고 부정 입력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의 실적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중복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적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입력 후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관리하되 동일직급에서 3년 이내에 동일과정을 중복으로 이수한 실적 또는 중복 입력한 실적 등을 즉시 삭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적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의 경우 승진심사에서 제외되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영양군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입력 및 점검·관리에 따른 중복 입력(승인)된 교육훈련 실적을 삭제하지 않아 중복 입력(승인)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삭제할 경우 승진심사일 기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해서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대상자가 승진임용 되도록 하였다.

[표] 교육훈련 중복 입력자 승진임용 현황

(단위 : 시간)

연번	승 진 의결일	승진후보자 직급	승진후보자 성명	충족 시간	인정 시간	중복내역 현황 내역	중복내역 현황 입력시기	중복 시간	실제 시간	충족 여부
1	‘22. 7. 8.	-- 7급→6급	---	593	605	(주택관리사 1차) 민법 기법이론	‘19.11.4.	114	461	부
						(주택관리사 1차) 민법 기본이론[72]	**‘22.7.5.**			
						(주택관리사 1차) 회계원리 기본이론	‘20.6.12.			
						(주택관리사 1차) 회계원리 기본이론[72]	**‘22.7.5.**			
2	‘23. 10. 13	-- 7급→6급	---	513	566	워드프로세서 필기이론	‘21.3.12.	110	456	부
						워드프로세서 필기이론[35]	**‘21.4.14.**			
						영화 질문하고 답하다	‘20.9.15.			
						영화 질문하고 답하다[15]	**‘22.3.21.**			
						주택관리사 1차	‘21.2.18.			
						주택관리사 1차[60]	**‘21.6.14.**			

더욱이 상기 [표]의 교육훈련시간 중복의 경우 중복내역분 모두 민간교육훈련기관 교육으로 영양군 ○○○○과(교육훈련부서)에서 실적을 입력하였음에도 입력 당시 동일직급 내 중복여부 및 동일년도 내 동일과정 등을 확인하지 않고 실적입력 하였으며 중복입력 대상자가 승진임용되는 시기까지 계속적으로 중복입력내역 등에 대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동일직급에서 동일과정을 중복입력하여 실질적으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6급 --- 등 2명이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지 못하고 승진임용 되었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식재산권 사용허가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영양군 ＃＃＃＃＃＃＃에서는 2023. 12. 8. 소유하고 있는 라이선스 '-----' 상표권(지식재산권)을 '주식회사 -----'에게 사용허가 하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에 따르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을 '지식재산'으로 명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3조의5 및 제43조의6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철회할 수 있고 사용허가 등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르면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을 한때에는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하되 농업인, 어업인의 소득증대, 중소기업의 수출증진, 창업기업·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영양군 ＃＃＃＃＃＃＃에서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정인만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사용료부과의 경우에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농업인, 어업인의 소득증대, 중소기업의 수출증진, 창업기업·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면제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영양군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3. 5. 10. '----------'과 ----- 상품화법 단품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로 2023. 11. 13. 중견기업[3]인 '주식회사 ------'에게 무상으로 ----- 상표권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 후, 2023. 12. 4. '주식회사 -----'으로부터 ----- 지식재산권(상표권)사용 협조 공문이 접수되자 2023. 12. 8. 상표권 사용 허락 계약서에 "계약기간 호빵 및 찐빵류와 동일 유형에 대해 제3자에게 동일한 사용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무상으로 '주식회사 -----'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였다.

[표] ----- 관련 업무협약 및 사용허가 경과

일 자	내 용	비 고
· 2023. 5. 10.	·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영양군 ↔ 주식회사 -----
· 2023. 11. 13.	· ----- 상표권 무상사용허가 검토	· 영양군(＃＃＃＃＃＃＃)
· 2023. 12. 4.	· ----- 지적재산권(상표권) 사용 협조 요청	· 주식회사 ----- → 영양군
· 2023. 12. 8.	· ----- 지적재산권(상표권) 무상사용허가	· 영양군 → 주식회사 -----

그 결과 지식재산권이 특정업체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되었으며, 판매량에 따라 산출되어 부과되어야 할 사용료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면제처리 되었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무상사용허가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상정 및 별도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3)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주식회사 -----' 공시자료의 분기보고서(2023. 9) 및 사업보고서(2023. 12.)의 기업구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견기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음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관급자재 수의계약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 ＊＊과에서는 감사일 현재 영양군 @@@@과의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묘목 구매 계약 요청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총 2건의 1인 견적 수의계약(총 계약금액 : 163,283,250원)을 체결하였다.

[표 1] 관급자재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원)

연번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방법	수의계약사유
			계약일	완료일			
합계	2건	1개 업체			163,283,250	1인 견적	
1	2023년 추기 조림사업 묘목 구입	---- (-- 소재)	‘23.10.13.	‘23.12.21.	75,202,100	1인 견적	산림자원법 제17조[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5]
2	2024년 춘기 조림사업 묘목 구입		‘24.03.20.	‘24.04.20.	88,081,150	1인 견적	

※ 영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8호 사목, 제30조

4) 산림자원법 제17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제1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묘생산업자 중 관련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게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8호 사목 :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및 제17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에 따르면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관련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종묘생산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묘생산업자 중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게 묘목생산사업[6]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7]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제3절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따르면 용역·물품 기타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경우 나라장터(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구「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8])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양군 * * 과에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대행할 수 있는 기관명이 명시[9]되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수의

6) 가) 경상북도 공고 제2022-2106호 2023년 산림용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 공고에 따르면 6. 묘목생산 대행자의 이행사항은 묘목생산자로 지정된 자는「종묘사업실시요령」(산림청 예규 제702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규격묘를 생산하여야 하며, 묘목의 수급은 수요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림에 차질이 없도록「종묘사업실시요령」에 따른 검사 후 합격묘목을 포장하여 상차까지로 함으로 되어 있고, 그 외 구매계약에 대해서는 별도 기재된 바가 없어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나) 경상북도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현황은 '23. 4. 기준 -----(-- 소재) 등 10개 업체가 존재(경북도 ----과 -8066(2023. 4. 12.)호)

7) 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2023. 7. 1.

8) 2021. 1. 1. 폐지, 현행「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다수의 묘목생산사업의 위탁·대행자로부터 조림사업을 위한 관급자재인 묘목 구입은 단순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나라장터에 공고[10]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정하고 계약을 추진하여 예산 절감의 노력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양군 ＊＊과에서는 영양군 @@@@과가 제출한 수의계약요청사유에 따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다수의 묘목생산사업을 위탁·대행하도록 지정받은 자 중 ----에 대해 근거로 할 수 없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11]에 의거 물품구매를 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나라장터에 공고하여 경쟁입찰(물품 입찰 시 최저낙찰율 88% 적용)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아래 [표 2]와 같이 계약금액(사업예정금액) 기준 최대 19,593,990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나라장터 입찰공고 시 계약금액(사업예정금액) 기준 예산 절감 내역

연번	계약명	계약상대자	입찰 시 최저 낙찰 예상금액[12] (B)	계약금액(사업예정금액) (A)	비고 (절감액 : A-B)
합계	2건	1개 업체	143,689,260원	163,283,250원	19,593,990원
1	2023년 추기 조림사업 묘목 구입	----[13] (-- 소재)	66,177,848원	75,202,100원 사업량 : 소나무 등 93,100본	9,024,252원
2	2024년 춘기 조림사업 묘목 구입		77,511,412원	88,081,150원 사업량 : 자작나무 등 89,150본	10,569,738원

※ 영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9) 법제처 법해석 사례(법제처-11-0631, 행정안전부, 2011. 11. 17.)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을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직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의 경우 이미 법령에서 사업 위탁 또는 대행을 명시한 것이므로 제3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전제로 경쟁입찰 방식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는 국가사업의 수탁 또는 대행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그 기관의 명칭이 명시된 기관만을 말한다고 본 해석례(법제처 2007. 3. 23. 07-0044 회신례)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

10) 2022년~2023년 기간동안 나라장터를 통해 --- 등 타 시·군이 조림사업 관련 묘목 구입 2인 견적 소액수의 공고를 하였음

11)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12) 개별 계약 품의 금액의 88%(입찰 시 최저낙찰률)을 곱하여 모두 더한 값(「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7. 1.))

13) ----은 '23. 4. 11. 경상북도가 묘목생산사업 대행자로 지정(경북도 ----과-8066(2023. 4. 12.)호)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 ○○○○과에서는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과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2024년 노후된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본청, 사업소, 읍면) 및 프린트 등에 대한 수요조사와 보급계획[14]을 아래 [표 1]과 같이 수립하고 있다.

[표 1]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 등 수요조사 및 보급 계획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예산서의 구입대수	구입방법
합계		135,900		
2024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24. 1. 1. ~ 12. 31.	135,900	PC 86대, 모니터 86대, 노트북 3대, 프린터 12대, 복합기 5대	조달구입 (제3자단가계약)

※ 영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다수공급자계약)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다수공급자계약) 제13조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물품 공급계약(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공급업체)로부터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의 납품업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14) 영양군 ○○○○과-34804(2023. 12. 12.)호, 2024년도 영양군 ○○○○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행정정보화운영-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그리고「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15]」(2단계경쟁 대상) 제49조,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제52조, (계약상대자 등의 제안서 제출) 제54조의2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16]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이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제안을 요청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물에 등록된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하되, 최대 10% 범위에서 가격을 할인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2단계경쟁 회피금지) 제51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1억 원[17]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18]」(대상 물품) 제3조에 따르면 개인용 컴퓨터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데스크톱컴퓨터 및 일체형컴퓨터이며, 모니터는 개인용 컴퓨터와 통합되어 단일 건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 이뤄지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구매할 경우 통합하여 단일 건으로 발주하여야 하며, 매년 노후된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 등의 필요한 수량을 전수조사 후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3자단가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구매할 것이 아니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해 납품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구매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24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인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일괄 발주하여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통해 구매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2]와 같이 1회 구매 시 1억 원 미만으로 품목별로 분리하여 구입의뢰 요청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15) 구「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가 2023. 7. 1. 폐지에 따른 현「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2108호, 2023. 7. 1.)으로 시행
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판로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제품을 말함
17)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18) 조달청 고시 제2022-29호, 2023. 1. 1.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경쟁 없이 제3자단가계약으로 구매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해 일괄 구매했을 경우 계약금액 기준 최대 11,438천 원(10%)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 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사업명(전산기기)	사업기간	계약금액	시행방법 (2단계경쟁, 제3자단가)	계약상대자	예산과목
합계	3건		114,381	제3자단가	3개 업체	
1	'24년 상반기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데스크톱)	'24. 1. 13. ~ 2. 12.	46,311	제3자단가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2	'24년 상반기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데스크톱)	'24. 1. 13. ~ 2. 12.	51,170	제3자단가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3	'24년 상반기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모니터)	'24. 1. 13. ~ 2. 12.	16,900	제3자단가	---(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 영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민간단체 운영 보조금 정산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영양군 &&&&과 및 ####과에서는 ----- 영양군지회, 영영군--- 등 민간단체에 법정운영비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지방재정법」(법률 제15803호, 제16855호, 제16857호) 제32조의6 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2호) 제16조, 제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에 제15조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은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고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양군 &&&&과 및 ####과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심사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자부담 사업비를 감액 집행하는 등 법령 등에 부적합한 경우를 발견했을 때에는 정산 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영양군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영양군지회에서 2020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집행 결과를 당초 교부 결정된 자부담 합계 2,214,000원 중에서 1,069,240원을 집행하고 1,144,760원을 감액 집행하였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95.3%/4.7%)로 나눈 후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96,020원을 반납받지 않고 그대로 정산·확정한 사실이 있다.

[표 1] ----- 영양군지회 보조금 집행 현황(2020년)

(단위 : 원)

보조 사업명	집 행 내 역			보조금 실제반납액	보조금 정당반납액*	차 액 (미반납액)	비고 (부서)
	구 분 (비율%)	교부액	집행액				
소 계		47,214,000	46,069,240	0	1,096,020	1,096,020	
----- 영양군지회 운영비	보조금 (95.3%)	45,000,000	45,000,000	0	1,096,020	1,096,020	&& &&과
	자부담 (4.7%)	2,214,000	1,069,240	1,144,760	48,740		

* 총집행액(46,069,240원) × 보조금 비율(95.3%) = 43,903,980원
총집행액(46,069,240원) × 자부담 비율(4.7%) = 2,165,260원
→ 보조금 : (교부액) 45,000,000원 - (집행액) 43,903,980원 = 1,096,020원(정당반납액)

또한, 영양군 ####과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영양군---에서 2020년, 2022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집행 결과를 당초 교부 결정된 자부담 합계 4,000,000원 중에서 1,059,366원을 집행하고 2,940,634원을 감액 집행하였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20년)98.8%/1.2%, ('22년)97.4%/2.6%]로 나눈 후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782,470원을 반납받지 않고 그대로 정산·확정한 사실이 있다.

[표 2] 영양군--- 사업비 집행 현황(2020년, 2022년)

(단위 : 원)

보조 사업명	집행 내역			보조금 실제반납액	보조금 정당반납액	차 액 (미반납액)	비고 (부서)
	구 분 (비율%)	교부액	집행액				
합 계		194,000,000	191,059,366	0	2,782,470	2,782,470	
소 계		81,000,000	80,407,946	592,054	556,950	556,950	----- 과
(2020년) 영양군--- 운영비	보조금 (98.8%)	80,000,000	80,000,000	0	556,950	556,950	
	자부담 (1.2%)	1,000,000	407,946	592,054	35,104		
소 계		113,000,000	110,651,420	2,348,580	2,225,520	2,225,520	----- 과
(2022년) 영양군--- 운영비	보조금 (97.4%)	110,000,000	110,000,000	0	2,225,520	2,225,520	
	자부담 (2.6%)	3,000,000	651,420	2,348,580	123,060		

* 2020년 : 총집행액(80,407,946원) × 보조금 비율(98.8%) = 79,443,050원
총집행액(80,407,946원) × 자부담 비율(1.2%) = 964,890원
→ 보조금 : (교부액) 80,000,000원 - (집행액) 79,443,050원 = 556,950원(정당반납액)

* 2022년 : 총집행액(110,651,420원) × 보조금 비율(97.4%) = 107,774,480원
총집행액(110,651,420원) × 자부담 비율(2.6%) = 2,876,940원
→ 보조금 : (교부액) 110,000,000원 - (집행액) 107,774,480원 = 2,225,520원(정당반납액)

이로 인해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에 따라 반납되어야 할 보조금 1,096,020원(----- 영양군지회 운영비)과 보조금 2,782,470원(영양군--- 운영비) 총 3,878,490원이 반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부적정하게 정산되어 미반납된 보조금 3,878,49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명령 등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 @@@@과에서는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재해방지 조치 및 복구명령, 복구설계서 승인, 복구비 예치, 복구 준공검사, 복구 대집행 등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사법처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명령 미이행 부적정

「산지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水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 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할 경우 산림청장 등은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불법산지전용으로 사법기관에 송치된 경우 불법산지전용을 한 행위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양군 @@@@과에서는 2020. 12. 1.부터 2024. 4. 15.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면 --리 산31-1번지 등 불법산지전용된 5건 2,700㎡에 대하여 복구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아 불법산지전용된 상태로 계속 사용하거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표 1]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미조치 현황

연번	위치	불법산지전용 현황		사법처리·사건송치일	비고
		목적	면적(㎡)		
	합계	5건	2,700		
1	--면 --리 산31-1	농경지조성	810	2021.11.19	
2	--면 --리 산51-1	염소가축방목	273	2021.11.10	
3	--면 --리 산37	불법건축물	45	2021.11.10	
4	--읍 --리 산96-13	불법건축물	76	2022.03.25	
5	--면 --리 508	농경지조성	1,496	2022.06.07	

※ 영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비 예치 부적정

「산지관리법」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 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으며,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복구비 예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 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불법산지전용되어 복구가 필요한 구역에 대해 재해방지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복구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양군 @@@@과에서는 불법산지전용 되어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및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불법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2]와 같이 －면 --리 산31-1번지 등 4건에 대한 복구비 67,650천 원을 통지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복구의무자가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대집행 등에 따른 산지복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불법산지전용 복구비 미예치 현황

연번	산림소재지	불법산지전용		사법처리결과		복구비 미예치액 (천 원)
		목적	면적(㎡)	처분일	처분내용	
	합계	4건	7,082			67,650
1	--면 --리 산31-1	농경지 조성	810	2021.11.19.	벌금 1백만 원	5,853
2	--면 --리 산122-1	농경지 조성	1,078	2023.01.16.	재판중	22,918
3	--면 --리 508	농경지 조성	1,496	2022.11.23.	벌금 4백만 원	10,810
4	--면 --리 559	농경지 조성	3,698	2023.11.21.	구약식	28,069

* 660㎡ 복구의무 면제 대상

** 영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부적정

「산지관리법」 제44조 제3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 복구 명령을 하는 경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불법산지전용의 경우 복구명령 등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 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복구명령 등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산지관리법」제57조에 따라 아래 [표 3]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표 3]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처분

구분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1천㎡ 미만인 경우	250천 원	500천 원	1,000천 원
1천㎡ 이상 1만㎡ 미만인 경우	500천 원	1,000천 원	2,000천 원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10] 과태료 부과 기준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불법산지전용되어 복구명령한 경우 30일 이내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산지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양군 @@@@과에서는 2020. 12. 1.~2024. 4. 15.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 4]와 같이 불법산지전용으로 복구명령된 －면 --리 산122-1번지 등 4건에 대하여 복구명령 등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총 과태료 1,500천 원을 부과하고, 복구의무자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도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다.

[표 4] 불법산지전용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 관련 과태료 미부과 현황

연번	산림소재지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과태료 미부과액 (천 원)
		목적	면적 (㎡)	복구명령일자	경과기간 '24. 4. 22. 기준 (일)	
	합계	4건	5,499			1,500
1	--면 --리 산122-1	농경지 조성	1,078	2023.01.05.	464	500
2	--면 --리 산44-1	진입로 개설	531	2023.07.12.	225	250
3	--면 --리 99	불법건축물	192	2023.07.12.	225	250
4	--면 --리 559	농경지 조성	3,698	2023.07.31.	205	500

※ 영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명령 미이행, 복구비 예치 미통지, 복구설계서 미제출자 등에게 과태료 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 ☆☆☆☆과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지역 소득 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영양군 농어촌민박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농어촌민박사업자 현황

개소/읍면	--읍	--면	--면	--면	--면	--면
25	5	3	1	7	6	3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수리 부적정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3]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시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 출장 등을 통해 신고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규모는 적정한지,

농어촌민박 기본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 등 갖추어야 할 사업 요건을 확인한 후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했다.

그런데 영양군 ☆☆☆☆과에서는 신고인이 해당 주택을 농어촌민박시설로 신고할 때에는 신고인이 거주하는 방을 제외한 나머지 방에 대해서만 객실로 지정해야 하는데도 아래 [표 2]와 같이 전체 방을 모두 객실로 지정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인의 거주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신고수리를 하였다.

[표 2] 농어촌민박 신고 수리 부적정 사업자 현황

(단위 : ㎡, 개)

상호	수리일자	소재지	신고인	면적	전체방수	객실수
---	'24.02.05.	영양군 ㅡ면 ----로 3498	---	82.8	2	2

그 결과「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사업에 부적합한 자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 사후관리 부적정

「농어촌정비법」제8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9조에 의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2조에 의하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거나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2023년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 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용도변경,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소방서, 위생 담당기관 및 부서, 건축 담당부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당초 신고된 내용과 달리 시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영양군 농어촌민박 25개소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당초 신고내용과 다르게 객실 수 및 면적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3] 농어촌민박 신고내용 위반사업자 현황

(단위 : 실, ㎡)

민박명칭	지정일자	민박소재지	운영자	변경 미신고 객실 수(면적)			비고
				신청	실제	초과	
합 계		5개소	5명				
---	2013.04.01.	--면 --로 647	---	5(204)	7(331)	2(127)	
---	2013.12.03.	--면 --길 19-29	---	4(95.67)	5(188.49)	1(92.82)	
---	2012.08.01.	--면 --로 642-12	---	2(16.5)	3(16.5)	1(0)	
---	2010.06.01.	--면 ----로 1151	---	3(43.56)	6(43.56)	3(0)	
---	2018.10.23.	--면 --로 597	---	4(66.11)	9(66.11)	5(0)	

※ 영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농어촌민박사업자 전기·가스 안전점검 부적정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에 의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19]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로 개정

그리고 같은 법 제132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매년 1회 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사본을 제출받아 안전하게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전기·가스 안전점검 실시여부 파악 및 확인서 제출을 독려하지 않는 등 안전한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후관리업무에 소홀히 하였다.

[표 4] 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징구 현황

연도	전기 안전점검		가스 안전점검		비고
	대상자	제출자	대상자	제출자	
2021	24	0	24	0	
2022	24	0	24	0	
2023	24	0	24	0	

4.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관련 부적정

「농어촌정비법」제86조의2에 의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2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2023년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서비스·위생·안전 분야 교육을 각각 1시간 이상씩(총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이수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실시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이수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5]과 같이 2023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1명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표 5] 2023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미이수 사업자 현황

상 호	대표자	주소	신고일자	교육 이수 여부	비고
---	---	--읍 --길 34-14	2023.01.04.	부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농어촌민박 신고수리 부적정 및 신고내용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의거 적정 조치를 하시고, 2023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200,000원)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조치 소홀**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 ◎◎◎◎과에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자 행정처분 미이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운행일시·목적 및 경로 등의 운행정보를 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중앙하단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별표 5]에 따르면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혹은 과징금 18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인천경찰청으로부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자에 대한 단속결과 공문을 통보받은 경우, 관련 법적처분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자 행정처분 미이행 내역

업체명 (운전자)	경찰통보일	위반내용	처분기준	처분내용	비고
--- (---)	2021. 10. 28.	운행기록증 미게시	사업일부정지 30일 (과징금 180만 원)	미이행	

※ 영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여객자동차 과징금 운용계획 미수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등 관련 법이 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과징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 및 적정 운용을 위하여 매년 관련 규정이 정하는 시기에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과징금 운용계획을 미수립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의심거래 상시점검 미이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3조 제10호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점검시스템(이하 “상시 점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하여 제공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행정처리 절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부정수급 행위 발생 여부를 조사하여 반기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 제51조의2 및「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상시 점검시스템으로 통보되는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하여 상시 조사에 착수하여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21. 1. 1.부터 2024. 3. 31.까지 상시 점검시스템으로 통보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12명(2021년 4명, 2022년 4명, 2023년 3명, 2024년 1명)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조사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

[표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미이행 현황

(단위 : 명, 원)

구분	미처리 현황										비고
	계		2021		2022		2023		2024		
	인원	보조금액	인원	보조금액	인원	보조금액	인원	보조금액	인원	보조금액	
계	12	7,228,397	4	1,929,734	4	2,878,180	3	1,935,517	1	484,966	
지역평균거래량 2배초과충전	11	7,223,993	3	1,925,330	4	2,878,180	3	1,935,517	1	484,966	
1시간이내 재충전	1	4,404	1	4,404	-	-	-	-	-	-	
1회 72리터 초과충전	1	-	1	-	-	-	-	-	-	-	
1일 120리터 초과충전	2	35,665			1	19,781	1	15,884	-	-	

※ 영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물안전법 관련 업무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1.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부적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시설물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소관시설물의 관리계획을 2024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양군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소관시설물 관리계획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일주일이 지난 2024. 2. 21. 제출하였다.

[표 1] 2024년 영양군 시설물관리계획 지연제출 현황

관리주체	시설물명	종별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안전등급	관리계획	수립일시(기준 : 매년 2. 15.까지)
영양군 ▽▽▽▽과	--교	3종	교량	도로교량	D	수립	‘24. 2. 21.
영양군 ▽▽▽▽과	--교	3종	교량	도로교량	C	수립	‘24. 2. 21.
영양군 ▽▽▽▽과	--교	3종	교량	도로교량	C	수립	‘24. 2. 21.
영양군 ▽▽▽▽과	--교	3종	교량	도로교량	D	수립	‘24. 2. 21.

관리주체	시설물명	종별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안전등급	관리 계획	수립일시(기준 : 매년 2. 15.까지)
영양군 ▽▽▽▽과	--교	3종	교량	도로교량	C	수립	‘24. 2. 21.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시특법 의무이행 모니터링 현황 재구성

2. 안전점검 추진 부적정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3조에서는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 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소관시설물 --교 외 2개교의 정밀안전검검을 점검기한인 4월 13일까지 완료하고 30일 이내인 5월 12까지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 2] 2024년 영양군 정밀안전점검 지연 현황

관리주체	시설물명	종별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안전등급	점검종류	점검기한	비고
영양군 ◇◇◇◇과	--교	2종	교량	도로교량	B	정밀안전점검	4.13.	
영양군 ◇◇◇◇과	--교	2종	교량	도로교량	B	정밀안전점검	4.13.	
영양군 ◇◇◇◇과	--5교	2종	교량	도로교량	B	정밀안전점검	4.13.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시특법 의무이행 모니터링 현황 재구성

그런데 영양군 ◇◇◇◇과에서는 소관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점검기한을 도과하여 현재까지 점검 진행중으로 기한 내에 점검완료 및 보고서 제출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3. 제3종 시설물의 지정 및 관리 업무 부적정

「시설물안전법」 제4조, 제5조, 제8조에 따르면 시설물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시설물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9조에 따르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책임기술자의 종합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같은 지침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등급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양군 ◇◇◇◇과 및 ▽▽▽▽과에서는 소관시설물의 규모를 검토하여 적정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관련 지침과 매뉴얼에 의거 유지관리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양군 ◇◇◇◇과 및 ▽▽▽▽과에서는 아래 [표 3] 및 가.~라.와 같이 제3종시설물에 대해 정기안전점검 실시 관련 안전등급 평가를 미흡하게 이행하였고, 제3종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항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제3종시설물 D등급 지정 및 오기등록 현황

관리부서	시설물명	종별	등급	D,E등급 지정일	점검종류	안전조치	문제점	비고
영양군 ◇◇◇◇과	--교	3종	D	23-09-25	정밀점검 (용역시행)	통행제한	정밀점검 비대상 등급	안전조치 개체계획 중
영양군 ▽▽▽▽과	--교	3종	D	23-04-14	정기점검 (자체시행)	-	등급판정 부적정	정밀점검 결과 C등급 판정
영양군 ▽▽▽▽과	--교	3종	D	23-04-14	정기점검 (자체시행)	-	안전조치 미흡	제한조치(23.04.22)
영양군 ▽▽▽▽과	캔틸레버 교량	2종	-	24-03-21	정밀점검 (용역시행)	해당없음	제3종시설	관리계획 수립중
영양군 ▽▽▽▽과	캔틸레버 교량(2)	2종	-	24-03-21	정밀점검 (용역시행)	해당없음	제3종시설	관리계획 수립중
영양군 ▽▽▽▽과	캔틸레버 교량(3)	2종	-	24-03-21	정밀점검 (용역시행)	해당없음	제3종시설	관리계획 수립중
영양군 ▽▽▽▽과	캔틸레버 교량(4)	2종	-	24-03-21	정밀점검 (용역시행)	해당없음	제3종시설	관리계획 수립중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시특법 의무이행 모니터링 현황 재구성

가. --교의 경우

--교는 2023년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성평가 용역(2023.07.04.~2023.10.01.)을 통하여 안전등급 D등급으로 판정되었다.

한편, 영양군 ◇◇◇◇과에서는「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종 시설물은 안전등급이 D등급일 경우에만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 당시의 안전등급이 C등급인 토구교를 정밀안전점검 시행 미대상임에도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시행하였다.

나. 양지교의 경우

--교는 제3종시설물의 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물 체크리스트 및 안전등급 상태점수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안전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나 시설물 외관조사만 실시한 후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시스템에 등재하였고, 그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하향조정되어 시설물 안전등급 판정 방식을 부적정하게 이행하였다.

그 결과 --교는 안전등급 D등급 판정 이후 시행한 “--교 외 2개교 정밀안전점검 용역”의 결과 --교의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재평가 되어 부적정한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결과가 번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교의 경우

--교의 정기점검은 2023년 하반기 --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안전등급 판정이 이루어져 D등급으로 판정되었으나 이후 정밀안전점검, 통행제한 조치 없이 시설물관리를 하고 있어 시설물안전법 상의 조치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교의 경우는「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에 따라 2018. 6. 18.(영양군 고시 제2018-47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후, 2022년 재난교부세 신청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교 개체공사(2023. 8. 7.~2024. 11. 29.)를 시행 중에 있다.

라. 캔틸레버교 외 3개교의 경우

영양군 ▽▽▽▽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 3-61호선 구간의 도로 교량을「시설물 안전법 시행령」[별표1의 2] 규정에 따른 제3종시설물로 등록 후 관리하여야 함에도 미흡한 검토로 인하여 제2종시설물로 오등록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오등록 시설물을 정정 등록하시기 바라며, 미흡한 안전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영양군 관내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공사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사 (대표자)	비고 (공정률)
			계	도급	관급			
1	--,--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하수처리장, 오수관로 L=7.7km	7,035	5,053	1,982	2020. 12. 28. ~ 2024. 06. 29.	--건설(주) (---)	90%
2	--,--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하수처리장, 오수관로 L=4.7km	4,567	3,240	1,327	2021. 07. 21. ~ 2024. 06. 02.	㈜--종합건설 (---)	90%
3	--리 하수관로 확장공사	오수관로 L=1.0km	1,037	721	316	2024. 02. 22. ~ 2024. 08. 19.	㈜--건설 (--)	20%

1. 설계의 안전성 검토 미이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양군 ㅁㅁㅁㅁ과에서는 '--·--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의 실시설계에 대하여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양군 ㅁㅁㅁㅁ과에서는 '--·--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가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완료(2020. 10. 2.)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착공하였다.

2.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수행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70호, 2023. 6. 30.) 제4장에서는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 시공 확인 소홀

영양군 ㅁㅁㅁㅁ과에서는 가천리 하수관로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수관로 설치 구간의 옥외지선 관로 터파기, 되메우기, 포장 복구시공 너비가 당초 0.87m로 설계되어 있으나 일부 관로 시공너비가 0.70m로 시공되어 사업비 2,189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지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나. 시공상세도 미작성 및 설계변경관리 미흡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지침, 2010. 7. 1.)에 따르면 시공상세도 작성은 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영양군 ♧♧♧♧과에서는 --·--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에 시공상세도 작성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50,432천 원), --·--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44,309천 원)의 시공상세도 미작성분 내역 합계 94,741천 원(제경비 포함)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감액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다. 수밀시험 용역 관리 소홀

영양군 ♧♧♧♧과에서는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따른 누수여부 확인을 위한 --·--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CCTV 및 수밀시험 용역(2021. 6. 25.~ 2025. 1. 1. --건설(주))을 추진 중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시험수량 및 물량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영양군 ♧♧♧♧과에서는 감소된 시험물량에 따른 용역비 4,610천 원(제경비 포함)에 대해 감액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CCTV 및 수밀시험 물량

구분	CCTV조사 (m)	하수관 수밀시험 (개소)	맨홀공기압시험 D600 (개소)	맨홀공기압시험 D900 (개소)	연막시험 (개소)	용역비 (천 원)	비고
당초물량	6,030	170	77	117	87	149,890	
변경물량	5,758	164	83	105	98	145,280	

또한, '--·--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차선도색 1,251㎡에 사용되는 노면표지용 페인트자재를 관급 구입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여야 하나, 사급 구입(48,090천 원, 제경비 포함)으로 추진하여 13,510천 원의 예산 낭비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101,540천 원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지원기술인 현장점검 지도·감독 소홀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영양군 ◇◇◇◇과 등 2개 부서에서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건설사업관리용역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부서명	과 업 명	과업내용	용역비	용역기간	용 역 사
계	2건					
1	◇◇◇◇과	--지구 정비사업 외 1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1식	948	’22. 6. 20.~ ’24. 6. 18.	㈜--- 외 1개사
2	♧♧♧♧과	--·-- 통합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건설사업관리 1식	2,774	’23. 3. 29.~ ’26. 8. 24.	㈜--- 외 2개사

※ 영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등[20]에 대하여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0)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및 그 밖에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따라 고시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21]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적[22]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23]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및 [별표 8]에 따르면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이 현장시공실태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벌점 부과 대상[24]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청에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적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양군 ◇◇◇◇과 등 2개 부서에서는 "--지구 정비사업 외 1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등 2개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회사로부터 각 전문분야의 기술지원기술인을 각 담당분야별로 투입하겠다는 투입계획서를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받았음에도 기술지원기술인이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월별 및 분기별 현장시공 상태 점검·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표 2]와 같이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해야 할 월별 현장점검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지원기술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관리관으로서 참여해야 할 분기별 현장점검에 아래 [표 3]과 같이 참석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21)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지시서 상의 업무 범위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에 따른 기술지원기술인의 근무수칙 등이 기술되어 있음

22)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

23)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24) 기술지원기술인의 현장점검 횟수가 2회 이상 부족한 경우에는 벌점 1점 부과, 1회 부족한 경우에는 벌점 0.5점 부과

[표 2] 기술지원기술인 현장점검 미참여 현황('22. 6. ~ '24. 3.)

(단위 : 회)

연번	부 서	용 역 명	점검계획 (월별 1회)	현장점검 미참여 내역	용역사
계	2건				
1	◇◇◇◇과	--지구 정비사업 외 1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5	25	㈜--- 외 1개사
2	♧♧♧♧과	--·-- 통합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9	9	㈜--- 외 2개사

※ 영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공사관리관 합동현장점검 미참여 현황('22. 6. ~ '24. 3.)

(단위 : 회)

연번	부 서	용 역 명	점검계획 (분기별 1회)	현장점검 미참여 내역
계	2건			
1	◇◇◇◇과	--지구 정비사업 외 1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7	6
2	♧♧♧♧과	--·-- 통합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3	3

※ 영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 ◇◇◇◇과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약 일	사업기간	도급자 (대표자)	비고 (공정률)
			계	도급	관급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영양군 --면 --리	하천정비 L=1.3㎞ 교량개체 1개소 등	5,069	3,310	1,759	'22. 7. 13.	'22. 7. 20.~ '24. 7. 18.	--건설㈜ (---)	90.7%
--지구 정비사업 외 1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영양군 --면	건설사업관리 1식	948	948	-	'22. 6. 20.	'22. 6. 20.~ '24. 6. 18.	㈜--- 외 1개사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영양군 --읍 --리	하천정비 L=0.25㎞ 교량개체 2개소 등	5,138	4,062	1,076	'23. 3. 23.	'23. 3. 30.~ '25. 8. 15.	㈜--종합건설 (---)	16.7%

1.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르면 발주청[25]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등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도록

25)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

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르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①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④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2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임에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미이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26]인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

26)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여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구매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구매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가설방음벽(세부품목번호: 3016170201, 가설재울타리)을 구입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구입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구입하였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면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8조, 제4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 ----과-369(2022. 1. 19.)호 및 5692(2022. 11. 8.)호로 회신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환경 영향 저감 방안과 본 협의내용을 사업승인 시 반영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사무소에 협의의견과 평가서의 저감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며,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착공 등을 하려는 경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며, 협의내용과 평가서의 저감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착공통보를 하지 않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당초 협의내용에 포함된 가배수로, 간이침사지 및 가설방음벽 등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미설치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지 않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4. 매트리스형 돌망태 시공 부적정

가. 설계도서 검토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등은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27]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7)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

제81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와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등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6절에 따르면 설계서[28]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이하 “시방서”라 한다)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등에게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설계도면과 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등에게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설계도면과 시방서에는 매트리스형 돌망태 채움돌 규격을 각각 90~150㎜, 80~150㎜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 상 규격이 150~230㎜라는 사유로 기준[29]에 적합하지 않은 채움돌을 구입하여 시공하였다.

나.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

28)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함

29) 「하천공사 설계실무요령」에 따르면 매트리스형 돌망태 채움돌의 규격은 H=0.30m의 경우 80~150㎜로 제시하고 있으며,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에는 채움돌의 크기는 망눈의 최소 치수보다 크고 망태 최소직경 또는 두께의 1/2보다 작은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건설자재·부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86조 및 제93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트리스형 돌망태 채움돌 규격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되었음에도 재시공 명령 없이 2023. 10. 20. 새들보 하류 매트리스형 돌망태 시공 A=1,535㎡에 대해 ‘설치 상태 양호’로 결과를 통보하고, 2023. 11. 15. No.9+14~No.17 밑다짐 매트리스형 돌망태 시공에 대해 ‘철망 매트 설치 및 결속상태 양호, 망태석 채움 적합’으로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2024. 4. 감사기간 중 방전우안제 No.3+6.25~No.17 구간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아래 [사진]과 같이 규격[30]보다 큰 채움돌이 현장에서 다수 확인되는 등 부적정하게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재시공 비용[31] 약 252,382천 원이 발생되게 하였다.

[사진]

30) 도면(90~150㎜), 시방서(80~150㎜, 설계·시방 기준과 동일) 및 관급자재 구매 규격(150~230㎜)
31) No.3+6.25~No.17(새들보 하류 포함) 구간 매트리스형 돌망태 헐기 및 재설치 A=3,230㎡(영양군 제출자료 참고)

다.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 지도·점검 소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0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기준 제12조에 의거 공사관리관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기성·준공검사 입회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성·준공검사 시에는 반드시 입회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지구 정비사업 외 1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면서 2차분 1회(2023. 9. 19.), 2차분 2회(2023. 12. 6.) 기성검사 시 입회하지 않았고, 매트리스형 돌망태 시공 부적정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수행이 부적정하였음에도 발주자로서의 지도·점검 등의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5. 실정보고 미승인 부적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에 따르면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발주청에 실정보고, 설계변경 방침결정에 대한 보고 및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단순한 경우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처리 등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1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사항의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지침 제13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실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시공자로부터 발주청에 실정보고, 설계변경 방침결정에 대한 보고 및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가시설 위치변경' 등 6건에 대한 실정보고 서류를 제출받았음에도 지연하여 승인하거나 미승인한 채 시공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표 2] 실정보고 현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연번	승인요청일	제목	수(발)신자	보고자	비고
1	'24. 03. 13.	--지구 실정보고(가시설 위치변경)	--종합건설	---	미승인
2	'24. 03. 04.	--지구 실정보고(가설사무소 관련)	--종합건설	---	미승인
3	'24. 03. 04.	--지구 실정보고(폐기물상차 관련)	--종합건설	---	미승인
4	'23. 10. 31.	실정보고(가설교량 강관파일 동재하시험 반영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종합건설	---	지연승인 ('23. 12. 8.)
5	'23. 10. 11.	실정보고(천공장비 작업로 설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종합건설	---	지연승인 ('23. 12. 8.)

6. 공사원가 과다 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양군 ◇◇◇◇과에서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방 비탈면 보호공을 거적덮기와 종자살포(3,317원/㎡)로 시공하면 더욱 경제적임에도 고가의 줄떼(6,667원/㎡)를 설계에 반영하여 15,423천 원, 기존 교량 철거에 따른 고재를 반영하지 않아 22,340천 원(부가세 포함), 교량 슬래브의 경우 합판거푸집(4회, 복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합판거푸집(3회, 보통)을 적용하여 22,187천 원(제경비 포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의거 차량 충돌에 의한 사고 피해의 우려가 높은 교명주는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량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설계에 반영하여 8,285천 원(제경비 포함) 등 총 68,235천 원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설사무실의 경우 당초 설계 면적(437㎡)과 실제 설치한 면적(239㎡)이 상이함에도 30,547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았고, 기존 교량 철거에 따른 고재를 반영하지 않아 21,910천 원(부가세 포함), 교량 슬래브의 경우 합판거푸집(4회, 복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합판거푸집(3회, 보통)을 적용하여 15,206천 원(제경비 포함) 등 총 67,663천 원을 과다 계상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에 대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검토하시고, 도면 및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된 매트리스형 돌망태에 대해 안정성을 검토하고 재시공하시기 바라며, 과다 계상된 사업비 135,898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산책로 설치공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 ＃＃＃＃과에서는 --- 관광지와 연계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 ▤▤▤▤(▤▤▤) 산책로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표 1] 사업현황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대표자)	비고 (공정률)
			계	도급	관급				
▤▤▤ ▤▤▤▤(▤▤▤) 산책로 설치공사	영양군 --면 --리	산책로설치 L=0.67㎞	833,622	470,622	363,000	'21. 2. 22.	'21. 2. 26.~ '21. 5. 26.	㈜--건설 (---)	100%

[표 2] 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 : 원)

지번	지목	지장물 종류	면적(㎡)			지급금액(원)	소유자	비고
			토지면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영양군 --면 --리 280-2	도로	토지, 지장물 (대추나무 등 62주)	335	3	332	15,261,250	---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손실이 있을 때(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할 때) 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양군 # # # # 과에서는 “▤▤▤ ▤▤▤▤(▤▤▤) 산책로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해서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을 하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나 토지소유주가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면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지 등을 검토한 후 매수·보상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당초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면 보상이 불필요하였음에도 편입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2021. 4. 2. 편입부지 감정을 의뢰하였고, 2021. 5. 17. 출장복명을 하여 ‘데크 설치 전체 구간 중 도로와 이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이격하여 보행자의 안전감을 향상’한다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선형을 일부 조정 후 영양군 －면 --리 280-2번지 전체면적 335㎡ 중 약 3㎡ 정도[32]가 편입되도록 하였으며, 잔여지 매수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5,261,25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

[그림]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2) 영양군 ####과 제출자료 참고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과, ＃＃＃＃과
내 용	

1. 건폐율 적용 부적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따르면 용도지역상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며,「영양군 군계획 조례」제56조에 따르면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내 건폐율은 20%이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4조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에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등에 따른 건폐율(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과 용적률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허가권자는「건축법」(건축허가)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관계 법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건축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건축협의 요청 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건폐율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동의 또는 부동의)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 건축허가 현황

(단위 : ㎡)

구분	대지위치	건축주	용도	허가일자/준공일자	허가내용			검토의견	비고
					대지면적	건축면적/연면적	건폐율		
신축	--읍 --리 146 외 1필지 (146-3)	영양군	제2종근생 (게이트볼장)	2021.09.08. (허가)	1,837 (1,357/480)	396 /396	21.56%	건폐율 적 합	법적기준 (20%이하)
				2022.07.19. /2022.10.26. (변경허가)	1,168 (688/480)	396 /396	33.90%	건폐율 적 합	

그런데 영양군 ▽▽▽▽과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 건축물(막구조)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로부터 건축허가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후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각각의 용도지역 등에 따른 건폐율(자연녹지지역 2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가중평균한 값(30.45%)을 적용한 설계도서를 보완 및 시정 등 조치 없이 "건폐율 적합"으로 회신하였고, 건축대지의 면적변경(분할) 관련 변경

허가신청의 협의요청에 대해서도 설계도서 보완 및 시정 등 조치 없이 “건폐율 적합”으로 회신한 사실이 있다.

2. 건축설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소홀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등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현장조사·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33]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와 검사조서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따라 「건축법」 또는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건축설계 및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 건축사사무소는 건폐율이 21.56%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정한 건폐율 20% 초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부적합한데도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조사와 검사조서에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검토결과 항목을 적합으로 조사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였으며, 허가사항 변경허가 건에 대해서도 건폐율이 33.9%로 부적합함에도 건축허가조사와 검사조서에 적합으로 조사하고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부적정하게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33)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3. 건설공사 사업의 계획·관리 등 감독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 및「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9조(용역감독자의 임무) 및 제43조(용역의 준공)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는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용역과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용역성과를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을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업이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용역성과를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양군 ＃＃＃＃과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 건축물(막구조) 설치공사”에 대하여 건축대지의 일부가 ＠＠＠＠과에서 시행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설치를 위한 건축대지로서 건축허가를 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등 사전 사업계획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과업지시서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부적정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건축협의를 시행하는 등 용역성과의 확인·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그 결과 동일한 필지를 건축대지로 하는 건축계획이 중복 허가가 되도록 하였으며 최초 허가 및 건축대지의 대지면적 변경(분할)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허가로 인하여 건폐율이 초과(33.9%)된 건축물이 건축되고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부적정에 관한 사항은「건축사법」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허가(신고)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는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와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제11조)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등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고 공사감리자는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시공자에게 시정 및 재시공 요구하여야 하며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양군 ▨▨▨▨과에서는 3층 이상이며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양군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읍 --리 108-23번지 상 증축신고(건축주 : --- 외 1)에 대하여 3층 이상으로 증축하려는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하였고, --읍 --리 513-16번지 상 대수선 신고(건축주 : --- 외 1)에 대하여 기존 내력벽을 해체하여 출입구를 증설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등 2건의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할 대상임에도 이에 대한 관련 법 검토를 소홀히 하여 부적정하게 건축신고 수리한 사실이 있다.

[표] 건축신고 수리 부적정 현황

구분	대지위치	신고수리일 (사용승인일)	건축주	용도	층수	신고내용		비고
						기존	변경	
증축	--읍 --리 108-23	2021. 5. 7. (2021. 6. 2.)	--- 외1	제2종근생	4층	611.76㎡	681.93㎡ (70.17㎡ 증)	연면적 8.99㎡ 초과
대수선	--읍 --리 513-16	2021. 8. 31. (2021. 9. 8.)	--- 외1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3층	3가구	4가구	1가구 증가

그 결과 해당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할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이 건축되고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